

#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 번 호	2774
------------	------

서상열 의원 (국민의힘, 구로1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! 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는 동일 영향권역 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사업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두 사업 간 시간적 간격이 과도하게 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합산함에 따라,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평가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
- 이에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간 시간 간격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,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, 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